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미시장

2. 제안이유

-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공기업 특별 회계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하여 경영합리화 도모.
- 장기 투자사업 및 지방채 상환 소요재원 확충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
- 원수값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으로 인상요인 발생.

3. 주요내용

- 상수도 업종별 요금을 연차별 평균 9.7% 인상(안 별표 2)
- 상수도 구경별 정액요금을 연차별 평균 11.1% 인상(안 별표 4)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수도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입법예고 : 2013. 4. 5 ~ 4. 25(20일간)(의견없음)
-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2013. 3.14)
- 구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2013. 5.22)

5. 검토의견

□ 본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 2007년도 요금 인상 이후 장기간 요금 인상을 하지 않아, 상수도 특별회계 누적 결함액 발생과, 지방채 상환, 장기 투자사업 재원확보, 한국수자원 공사의 원수 값 인상 등으로,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여,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시 원안 가결되었음.

□ 그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경북도 市部 중, 상수도 사용료 요금이 최저치이므로, 2013. 8월 고지분 부터 평균 9.7%, 2014. 8월 고지분 부터 평균 9.7%를 인상하려는 계획(안)임.

□ 검토결과

-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요금의 산정방식)에 의거, 요금은 영업비용에 자본비용을 가산하여 총괄 원가를 산정하였으며,
- 2011년도 기준으로 상수도 원가(영업비용) 구성 비용 비율을 보면, 원·정수비 62.75%, 감가상각비 14.75%, 인건비 8.92% 등으로서, 원·정수 비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한국수자원공사가 2013. 1. 1일부터 전국적으로 원수값 4.9%를 인상하여 상수도 사용료 인상 요인을 발생하게 하였음.
- 2013년 이후, 104억원의 지방채 상환, 20년 이상 노후관로(167km) 교체에 420억원, 장기투자사업의 필요성, 79억원의 누적 결함액 해소와,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 금번, 상수도 사용료 요금 인상을, 2개 년도에 걸쳐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제29조 관련)

[단위 : 원/m³]

업종별	단 계 별	요 금	
		2013. 8월 고지분부터	2014. 8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0 ~ 20m³ (1단계)	330	360
	21 ~ 30m³ (2단계)	470	510
	31 m³ 이상 (3단계)	790	860
일반용	0 ~ 100m³ (1단계)	560	600
	101 ~ 300m³ (2단계)	780	830
	301 ~ 1,000m³ (3단계)	890	950
	1,001 ~ 2,000m³ (4단계)	1,040	1,110
	2,001 m³ 이상 (5단계)	1,160	1,230
옥탕용	0 ~ 1,000m³ (1단계)	1,000	1,110
	1,001 ~ 1,500m³ (2단계)	1,100	1,210
	1,501 ~ 2,000m³ (3단계)	1,220	1,340
	2,001 m³ 이상 (4단계)	1,280	1,400
전 용 공업용	계약m³당	330	380
	초과m³당	450	510

※ 업종별 사용요금은 사용량별 매 초과 m³당 요금임.

※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제47조의 상수도 시설 훼손,
제39조의 일시급수의 경우 일반용 최고 요율 적용

구경별 정액요금(제35조 관련)

[단위 : 원]

구경별	요 금		비 고
	2013. 8월 고지분부터	2014. 8월 고지분부터	
13 mm	1,000	1,090	
20 mm	2,800	3,050	
25 mm	4,500	4,890	
32 mm	8,010	8,720	
40 mm	13,530	14,730	
50 mm	20,750	22,590	
80 mm	57,710	62,810	
100 mm	85,770	93,350	
150 mm	186,780	203,200	
200 mm	265,360	288,740	
250 mm	357,890	389,390	
300 mm	431,680	469,730	
350 mm	543,540	591,600	
400 mm	591,450	643,660	
500 mm	754,740	821,800	
600 mm	1,233,290	1,343,150	
800 mm 이상	1,308,120	1,492,810	
※ 공동주택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제35조제4항을 적용			

별표 신규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2]			■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별표 2]		
<u>상수도 업종별 요금표</u> (조례 제29조 관련)			<u>상수도 업종별 요금표</u> (제29조 관련)		
(단위 : 원)			[단위 : 원/㎥]		
업종별	단계별	요금	업종별	단계별	요금
					2013. 8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0 ~ 20㎥ (1단계)	300	가정용	0 ~ 20㎥ (1단계)	330
	21 ~ 30㎥ (2단계)	430		21 ~ 30㎥ (2단계)	470
	31 ㎥ 이상 (3단계)	720		31 ㎥ 이상 (3단계)	790
일반용	0 ~ 100㎥ (1단계)	520	일반용	0 ~ 100㎥ (1단계)	560
	101 ~ 300㎥ (2단계)	730		101 ~ 300㎥ (2단계)	780
	301 ~ 1,000㎥ (3단계)	830		301 ~ 1,000㎥ (3단계)	890
	1,001 ~ 2,000㎥ (4단계)	970		1,001 ~ 2,000㎥ (4단계)	1,040
	2,001㎥ 이상 (5단계)	1,090		2,001㎥ 이상 (5단계)	1,160
욕탕용	0 ~ 1,000㎥ (1단계)	900	욕탕용	0 ~ 1,000㎥ (1단계)	1,000
	1,001 ~ 1,500㎥ (2단계)	990		1,001 ~ 1,500㎥ (2단계)	1,100
	1,501 ~ 2,000㎥ (3단계)	1,100		1,501 ~ 2,000㎥ (3단계)	1,220
	2,001㎥ 이상 (4단계)	1,160		2,001㎥ 이상 (4단계)	1,280
전 용 공업용	계약㎥당	280	전 용 공업용	계약㎥당	330
	초과㎥당	390		초과㎥당	450
※ 업종별 사용요금은 사용량별 매 초과 ㎥당 요금임. ※ 조례 제47조의 상수도 시설 훼손, 제39조의 일시급수의 경우 일반용 최고요율 적용			※ 현행과 같음. ※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제47조의 상수도 시설 훼손, 제39조의 일시급수의 경우 일반용 최고 요율 적용		

[별표 4]

구경별 정액요금(조례 제35조 관련)

구경별	요금	구경별	요 금	
			2013. 8월 고지분부터	2014. 8월 고지분부터
13 mm	<u>910</u>	13 mm	<u>1,000</u>	<u>1,090</u>
20 mm	<u>2,550</u>	20 mm	<u>2,800</u>	<u>3,050</u>
25 mm	<u>4,110</u>	25 mm	<u>4,500</u>	<u>4,890</u>
32 mm	<u>7,300</u>	32 mm	<u>8,010</u>	<u>8,720</u>
40 mm	<u>12,330</u>	40 mm	<u>13,530</u>	<u>14,730</u>
50 mm	<u>18,910</u>	50 mm	<u>20,750</u>	<u>22,590</u>
80 mm	<u>52,610</u>	80 mm	<u>57,710</u>	<u>62,810</u>
100 mm	<u>78,190</u>	100 mm	<u>85,770</u>	<u>93,350</u>
150 mm	<u>170,360</u>	150 mm	<u>186,780</u>	<u>203,200</u>
200 mm	<u>241,980</u>	200 mm	<u>265,360</u>	<u>288,740</u>
250 mm	<u>326,390</u>	250 mm	<u>357,890</u>	<u>389,390</u>
300 mm	<u>393,630</u>	300 mm	<u>431,680</u>	<u>469,730</u>
350 mm	<u>495,480</u>	350 mm	<u>543,540</u>	<u>591,600</u>
400 mm	<u>539,240</u>	400 mm	<u>591,450</u>	<u>643,660</u>
500 mm	<u>687,680</u>	500 mm	<u>754,740</u>	<u>821,800</u>
500 mm이상	<u>1,123,430</u>	600 mm	<u>1,233,290</u>	<u>1,343,150</u>

※ (공동주택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조례 제35조 제4항 각호 적용)

■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별표 4]

구경별 정액요금(제35조 관련)

[단위 : 원]

구경별	요금	구경별	요 금	
			2013. 8월 고지분부터	2014. 8월 고지분부터
13 mm	<u>910</u>	13 mm	<u>1,000</u>	<u>1,090</u>
20 mm	<u>2,550</u>	20 mm	<u>2,800</u>	<u>3,050</u>
25 mm	<u>4,110</u>	25 mm	<u>4,500</u>	<u>4,890</u>
32 mm	<u>7,300</u>	32 mm	<u>8,010</u>	<u>8,720</u>
40 mm	<u>12,330</u>	40 mm	<u>13,530</u>	<u>14,730</u>
50 mm	<u>18,910</u>	50 mm	<u>20,750</u>	<u>22,590</u>
80 mm	<u>52,610</u>	80 mm	<u>57,710</u>	<u>62,810</u>
100 mm	<u>78,190</u>	100 mm	<u>85,770</u>	<u>93,350</u>
150 mm	<u>170,360</u>	150 mm	<u>186,780</u>	<u>203,200</u>
200 mm	<u>241,980</u>	200 mm	<u>265,360</u>	<u>288,740</u>
250 mm	<u>326,390</u>	250 mm	<u>357,890</u>	<u>389,390</u>
300 mm	<u>393,630</u>	300 mm	<u>431,680</u>	<u>469,730</u>
350 mm	<u>495,480</u>	350 mm	<u>543,540</u>	<u>591,600</u>
400 mm	<u>539,240</u>	400 mm	<u>591,450</u>	<u>643,660</u>
500 mm	<u>687,680</u>	500 mm	<u>754,740</u>	<u>821,800</u>
500 mm이상	<u>1,123,430</u>	600 mm	<u>1,233,290</u>	<u>1,343,150</u>
		800 mm 이상	<u>1,308,120</u>	<u>1,492,810</u>

※ 공동주택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제35조제4항을 적용